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9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2.

이 진 환 의원

# 제안 설명서

제안자 : 이진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진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는 스마트팜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는 스마트농업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01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 의 자 : 이진환, 박왕규, 임미연,  
강한곤, 박정환

### 1.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안 제4조)
- 다. 스마트팜의 운영 등 (안 제5조)
- 라. 기술 개발 및 보급 (안 제6조)
- 마. 교육 및 컨설팅 등 (안 제7조)
- 바. 스마트농업 홍보 (안 제8조)
- 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안 제9조)
- 아.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안 부칙 제2조)

### 3. 제정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나. 비용추계: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스마트팜 운영 수탁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팜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단체·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스마트농장”을 “개인·단체·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관계 법령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1. (생략)